

1. 개요

1) 인권헌장 제정 목적

상신브레이크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상신브레이크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2) 인권헌장 적용 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상신브레이크의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으로서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상신브레이크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 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신브레이크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본원칙

제1조 인권 존중

상신브레이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서로 존중한다.

제2조 차별 금지

상신브레이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임신, 출산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 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제3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상신브레이크는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강압적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 근로조건 준수

상신브레이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5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상신브레이크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6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상신브레이크는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법률에 따라 15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산업안전 보장

상신브레이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 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제8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상신브레이크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 보전에 대한 권리, 거주 자유를 보장한다.

제9조 고객 인권 보호

상신브레이크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인권 침해 신고 채널: 상신브레이크 인권헌장 담당자
부서명 : 총무부 인사팀
이메일 : cym1202@sangsin.com